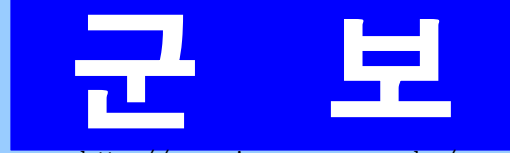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jeongseon.go.kr/>

제298호 2013. 7. 31. (수)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343호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 조례 제2344호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정선군 조례 제234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정선군 조례 제2346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정선군 조례 제2347호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28
- 정선군 조례 제2348호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32
- 정선군 조례 제2349호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5
- 정선군 조례 제2350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41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17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44
- 정선군 규칙 제1218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2

조 례

제206회 정선군의회(2013.07.16.)에서 의결된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343호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정선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9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과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 있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당연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1/3 이내로 한다.

제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단체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직전 및 현직대표는 해당연도의 심의 시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표결할 수 없다.

제8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의 위촉직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u> 제2조(보조단체의 범위)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단체의 범위는 다음 <u>각호의 1과</u> 같다. 1. ~ 2.(생략)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u>각호의 1과</u> 같다. ② (생략) 1. ~ 3. (생략) <u><신설></u> 4. 기타 군수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단체 제5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생략) ② <u>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u> ③ <u>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u> 1. <u>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농업축산과장, 관광문화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u> 2. (생략) ④ (생략)	<u>정선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u> 제2조(보조단체의 범위) ----- ----- <u>각 호의 어느 하나와 --.</u> 1. ~ 2.(현행과 같음)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등) ① ----- ----- ----- <u>각 호의 어느 하나와 --.</u>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u>4.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u> <u>5. -----</u> -----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u>위원회는 9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u> ③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당연직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 있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당연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1/3 이내로 한다.</u>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⑤ (생 략) 1. <u>사회단체 육성과 관련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u> 2. <u>보조사업 및 지원범위 결정</u> 3. <u>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심의</u> 4. (생 략) 제7조(회의 등) ① ~ ② (생 략) ③ <u>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보조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해당안건 심의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할 수 없다.</u> ④ (생 략) 제8조(보조사업의 결정) ① ~ ② (생 략) ③ <u>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중 지체없이 사업을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액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군 소속 과장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u>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u>사회단체의 장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u>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u> 1. ~ 5.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 <u>사회단체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u> 2. <u>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u> 3. <u>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u> 4.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직전 및 현직대표는 해당연도의 심의 시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표결할 수 없다.</u>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보조사업의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 ----- ----- ----- 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 5.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개정(제5조)
 - 위원의 수를 9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
 -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을 전체위원의 1/3 이내로 구성
- 위원회 회의 운영 개정(제7조 제3항)
 -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직접이해 당사자의 참석 배제

제206회 정선군의회(2013.07.16.)에서 의결된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344호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를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매5년 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3장 제목 “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을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정년이 5년 이내인 경우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기존 수탁자의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5인 이상 10인”을 “5명 이상 10명”으로 한다.

제4장 제목 “비용의보조및반환”을 “비용의 보조 및 반환”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 보육시설 명칭 및 위치(제12조 관련)

명 칭	위 치	설치연월일
정선어린이집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4길 8	1990. 4. 3.
사북어린이집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32	2004. 3. 1.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1-5	2012. 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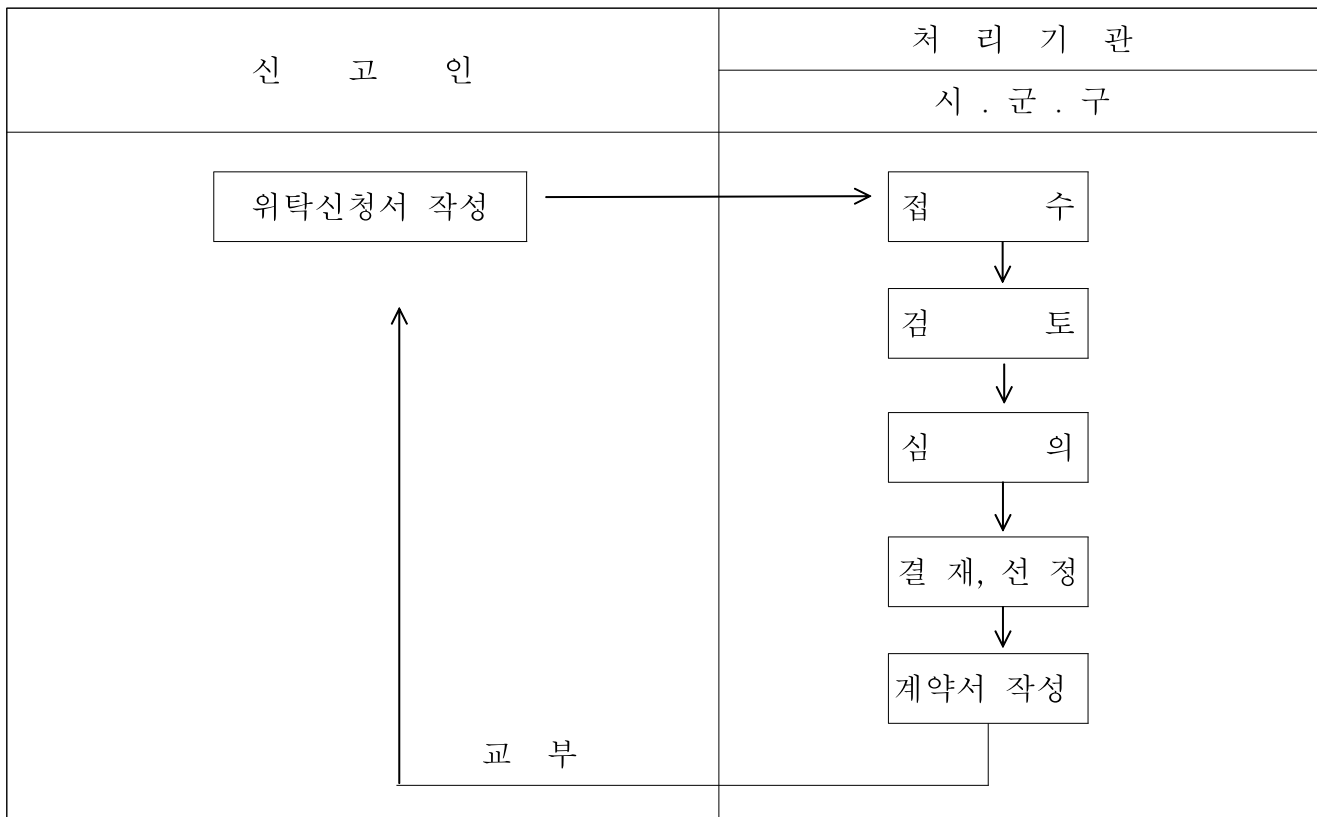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보육시설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② 법인·단체명			
	③ 주소	(전화 :)				
	④ 생년월일					
보육시설장	⑤ 성명					
	⑥ 주소	(전화 :)				
	⑦ 생년월일					
시설개요	⑧ 명칭					
	⑨ 소재지	(전화 :)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뒷면 참조						수수료
						없음

(뒷면)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보 육 시 설 위 탁 계 약 증 서

- 시 설 명 칭:
- 소 재 지:
- 법 인 . 단 체 명 :
- 대 표 자 성 명 : (한자:)
- 생 년 월 일:
- 보 육 시 설 의 장 성 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위 탁 기 간: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u>	<u>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제2조(정의) ----- ---- <u>뜻은</u> -----.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책임) ① ~ ② (생 략) ③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u>매5년 마다</u>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5년마다</u> ----- ----- -----.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u>1인을 포함하여 15인</u>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u>각 호의 1</u>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 6. (생 략)	제5조(구성) ① ----- ---- <u>1명을 포함하여 15명</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잔여기간</u> 으로 하고, 공무원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 ----- -- <u>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u>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u>1인</u> 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1명</u> -----.
제3장 <u>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u>	제3장 <u>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u>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탁계약) ① (생 략) ② <u>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u> <u><신 설></u>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위탁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u>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정년이 5년 이내인 경우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u> ③ <u>군수는 기존 수탁자의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u> ④ ----- ----- ----- --.
제1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① 보육시설의 자율적이고 특성있는 운영을 위해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u>5인 이상 10인</u>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① ----- ----- ----- ----- - <u>5명 이상 10명</u>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u>비용의보존및반환</u>	제4장 <u>비용의 보존 및 반환</u>
제22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u>각 호의 1</u>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22조(보조금의 환수)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 ~ 4.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 반영 및 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위탁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으로 변경(제14조)
 - ※ 기존 조례는 ‘3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과 상충되어 5년으로 개정
- 공립보육시설 명칭과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을 추가함(별표)

제206회 정선군의회(2013.07.16.)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34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568명”을 “57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57명”을 “56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의 회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572	-				
정무직 계	1	-				
일반직 계	458	-				
3급	-					
4급	3		3			
5급	25	2	11	2	1	9
6급이하 계	430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0	-				
6급 상당 이하 계	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0	-				
연구사	4	-				
지도직 계	20	-				
지도관	2			2		
지도사	18	-				
기능직 계	87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u>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568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557명</u> 2. (생략)	<u>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u> 제2조(정원의 총수) ----- ----- — <u>572명</u>-----. 1. ----- : <u>561명</u> 2.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인력 조정사항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원의 총수: 572명
 - 집행기관: 561명(증 4명)
 - 의 회: 11명(현행과 같음)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별표 3)
 - 일반직(453명→458명)
 - 사회복지7급 증1명, 행정9급 증 1명, 사회복지9급 증2명, 시설9급 증1명
 - 기능직(88명→87명): 기능9급 감1명

제206회 정선군의회(2013.07.16.)에서 의결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346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8호 중 “관광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10호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혁신분권,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를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로 하고, “지역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민방위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관리,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동원, 충무계획 수립 및 정부연습계획(을지연습) 실시, 공익근무요원 배정관리”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에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지역안전 및 재난총괄
- 안전문화·정보관리
- 안전상황관리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
- 지역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민방위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관리
-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동원
- 충무계획 수립 및 정부연습계획(을지연습) 실시
- 공익근무요원 배정관리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진료원” 을 각각 “보건진료소장”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남평리 412번지” 를 “송석길 146-7” 으로 한다.

제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축산기술 시범사업 및 지도

제9조의5제2항 중 “북실리 828-2번지” 를 “정선로 1047” 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 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②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 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③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관광문화과장” 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하고, “건설방재과장” 을 “안전건설과장” 으로 한다.

④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 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관광문화과장” 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⑥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관광문화과장” 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⑦ 정선군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 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 ⑧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 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하고, “건설방재과장” 을 “안전건설과장” 으로 한다.
- ⑨ 정선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관광문화과장” 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 ⑩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 을 “안전건설과장” 으로 한다.
- ⑪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 을 “안전건설과장” 으로 한다.
- ⑫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 을 “안전건설과장” 으로 한다.
- ⑬ 정선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 을 “안전건설과장” 으로 한다.
- ⑭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건설방재과” 를 “안전건설과” 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 을 “안전건설과장” 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정선군보건소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 일원
고한사복지소	고한읍 물한리길 10	고한읍, 사북읍 일원
신동읍지소	신동읍 의림로 313	신동읍 일원
화암면지소	화암면 그림바위길 57	화암면 일원
남면지소	남면 별어곡1길 59	남면 일원
여량면지소	여량면 서동로 2885	여량면 일원
북평면지소	북평면 북평6길 34	북평면 일원
임계면지소	임계면 송계8길 9	임계면 일원
용탄보건진료소	정선읍 가리왕산로 290	정선읍 용탄1~3리, 회동1~2리
광하보건진료소	정선읍 망하길 87	정선읍 광하1~2리, 굴암리, 가수리
조동보건진료소	신동읍 새골길 30	신동읍 조동1~9리, 방제1~2리
고성보건진료소	신동읍 창말길 26	신동읍 고성1~2리, 덕천리, 운치1~3리
호춘보건진료소	화암면 풍춘1길 12-6	화암면 물운1~2리, 호춘리, 건천리
증산보건진료소	남면 무릉3로 12	남면 무릉1~5리
광락보건진료소	남면 광락로 46	남면 낙동1~3리, 광덕1~2리
구절보건진료소	여량면 구절양지말길 28	여량면 유천1.3리, 구절1~3리
도전보건진료소	임계면 눈꽃마을길 184	임계면 가목리, 도전1~2리, 직원1~2리
반천보건진료소	임계면 반천고양로 796	임계면 반천1~2리, 고양리, 여량면 봉정리
문래보건진료소	임계면 백두대간로 312	임계면 문래1~3리, 덕암리, 용산2리

[별표 2]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 관련)

출 장 소 명	위 치	관 할 구 역
신동읍 함백출장소	신동읍 새골길 30	신동읍 조동리, 방제리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u> 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생태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u>관광문화과</u>, 지역경제과, <u>건설방재과</u>, 도시건축과를 둔다. ② (생략) 1. ~ 2. (생략) 3. 자치행정과 ○ (생략) ○ <u>혁신분권,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u> ○ <u>지역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u> ○ <u>민방위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관리</u> ○ <u>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동원</u> ○ <u>충무계획 수립 및 정부연습계획(을지연습) 실시</u> ○ <u>공익근무요원 배정관리</u> ○ 그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4. ~ 7. (생략) <u>8. 관광문화과</u> ○ (생략) 9. (생략) <u>10. 건설방재과</u> <u><신설></u> <u><신설></u>	<u>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u> 제3조(실·과의 설치) ① ----- ----- ----- ----- <u>문화관광</u> <u>과</u> ----- <u>안전건설과</u>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자치행정과 ○ (현행과 같음) ○ <u>규제개혁에 관한 업무</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 ----- ---- ○ ----- 4. ~ 7. (현행과 같음) <u>8. 문화관광과</u> ○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u>10. 안전건설과</u> ○ <u>지역안전 및 재난총괄</u> ○ <u>안전문화·정보관리</u>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군도 및 농촌도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 (생 략) 11. ~ 13. (생 략) 제5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 건진료소에 <u>보건진료원</u>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 과 <u>보건진료원</u>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 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① (생 략) ② <u>보건진료원</u>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사무 를 수행한다. 제7조(설치) ① (생 략) 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u>남평리 412번지</u>에 둔다.	○ <u>안전상황관리</u> ○ <u>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u> ○ <u>지역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u> ○ <u>민방위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관리</u> ○ <u>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동원</u> ○ <u>충무계획 수립 및 정부연습계획</u> <u>(을지연습) 실시</u> ○ <u>공익근무요원 배정관리</u> ○ ----- ----- ○ (현행과 같음) 11. ~ 13. (현행과 같음) 제5조(소장 등) ①----- ----- ----- <u>보건진료소장</u> -----. ② ----- ----- <u>보건진료소장</u> ----- ----- -----. 제6조(소관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보건진료소장</u> ----- ----- ----- -----. 제7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송석길 146-7</u>-----.

현행	개정안
제9조(소관사무) (생략) 1.~9. (생략) <u><신설></u>	제9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u>10. 축산기술 시범사업 및 지도</u>
제9조의5(설치) ① (생략) ② 사업소의 위치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u>북실리 828-2번지</u> 에 둔다.	제9조의5(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정선로 1047</u> -----.

개 정 이 유

-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을 반영하고, 군정 주요현안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아리랑의 세계화 등 문화융성 가치 확대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제3조)
 - “관광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확대 개편
- 부서별 사무조정(제3조)
 - 자치행정과 사무 중 “지역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민방위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관리,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동원, 충무계획 수립 및 정부연습계획(을지연습) 실시, 공익근무요원 배정관리”를 신설 안전건설과에 이관하고, “혁신분권”을 삭제함.
 - 신설 안전건설과 사무에 “지역안전 및 재난총괄, 안전문화·정보 관리, 안전상황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을 추가로 분장함.
-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제5조 및 제6조)
- 농업기술센터 사무 추가 분장(제9조)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소 변경(제7조 및 안 제9조의5)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출장소의 주소 변경(별표1·별표2)

제206회 정선군의회(2013.07.16.)에서 의결된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347호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선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월 25만원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매월 직급보조비 가산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설치기구의 소재지가 정선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업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병 지	월 791,000원 이하	월 710,000원 이하

비고: 전문의사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근무연수별 \ 등급별	가 급	나 급
5 년 이 상	월 1,012,000원 이하	월 6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006,000원 이하	월 6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000,000원 이하	월 6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995,000원 이하	월 656,000원 이하
2 년 미 만	월 989,000원 이하	월 650,000원 이하

비고: 1.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2. 등급(가, 나)구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3조 [별표]

【별표 3】

장려수당 지급액 구분표(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1.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270,000원
2.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240,000원

개 정 이 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수당의 변경사항 반영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신설
 - 서울사무소 등 원격지 근무자에게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현실과 맞지 않는 방법수당 지급근거 삭제

주 요 내 용

- 조례 제명 변경
 -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 “정선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신설(제2조)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에 대하여 월 250,000원 지급
- 현재 운용되지 않는 방법원의 방법수당 지급근거 삭제
-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액 신설(제4조)
 -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금 300,000원 지급

제206회 정선군의회(2013.07.16.)에서 의결된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348호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단, 대학의 대학원,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학생
2. 대학교는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인 학생. 다만, 신입생은 최종학교 성적이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 6등급 이내인 학생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부분에서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 각각 연간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단, 신입생은 입학금 포함)으로 하고, 대학생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를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고등학생은 학교장을 통하여, 대학생은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정선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규정에 의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이장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제2조)
 - 현행 중·고등학교 ⇒ 고등학교 및 대학교
- 장학생 자격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명확하게 명시(제2조)
 -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 대학생은 평점 4.5점 만점에 3.0점 이상
 - 기능, 체육, 예능부분에서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
- 장학생의 정원 명시(제5조)
 - 고등학생, 대학생 각각 연간 이장 정수의 15% 이내
 - ※ 고등학생, 대학생 각각 연간 27명 이내
- 장학생의 장학금액을 명시(제6조)
 - 고등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 대학생은 연 150만원

제206회 정선군의회(2013.07.16.)에서 의결된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349호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조례”를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설치하는”을 “설치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정선군아라리촌(이하 “아라리촌”이라 한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전통가옥의 숙박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정선아리랑상품권”이란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의해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중 “애산리 560번지”를 “애산로 37”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입장 및 이용료) ① 아라리촌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정선아리랑상품권(1인 3천 원 상당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다.

② 전통가옥의 숙박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사항은 아라리촌에 입장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전통가옥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전통가옥 이용권의 효력은 1박에 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이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용료를 환불하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입장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선아리랑상품권 소지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사람
5. 학술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정선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입장하는 경우
8. 아라리촌 내 편의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 및 그 종업원
9.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및 정선군민(정선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제2항 중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조례」”를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로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 아라리촌 운영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민속문화시설 체험을 통한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창조를 위하여 <u>설치하는</u> 정선군아라리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학생과 만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만13세이상 18세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병장이하의 군인 및 의무경찰·전투경찰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만19세이상 6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30인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라 함은 정선군아라리촌(이하 “아라리촌”이라 한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이용료”라 함은 전통가옥의 숙박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아라리촌은 정선군 정선읍 <u>애산리 560번지</u>에 둔다. 제5조(입장료 및 이용료 등) ① 매일 9시 이후부터 18시이전에 아라리촌에 입장	<u>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 ----- ----- <u>설치한</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정선군아라리촌(이하 “아라리촌”이라 한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전통가옥의 숙박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정선아리랑상품권”이란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의해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위치) ----- <u>애산로 37</u>----- . 제5조(입장 및 이용료) ① 아라리촌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정선아리랑상품권

현행	개정안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통가옥의 숙박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아라리촌에 입장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전통가옥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입장권의 효력은 당일 1회, 전통가옥 이용권은 1박에 한한다.	(1인 3천원 상당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다. ② 전통가옥의 숙박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사항은 아라리촌에 입장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전통가옥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전통가옥 이용권의 효력은 1박에 한한다.
제6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입장료 및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이하의 어린이 및 만65세이상인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제7조(입장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선아리랑상품권 소지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민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현 행	개 정 안
<u>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자</u> 5. 학술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정선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u>교육을 목적으로 단체입장하는 경우</u> 8. 아라리촌내 편의시설물을 운영하는 <u>자 및 그 종업원</u> 9. 기타 군수가 입장료를 면제하여야 할 <u>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u> ② 정선군민(정선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8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라리촌의 입장 및 전통가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및 정신병자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자 3. 제9조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생 략) ② (생 략) 제13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u>정선군 아라리촌 운영조례</u>」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u>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사람</u> 5. 학술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u>사람</u>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u>사람</u> 7. 정선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u>교육을 목적으로 단체입장하는 경우</u> 8. 아라리촌내 편의시설물을 운영하는 <u>사람 및 그 종업원</u> 9.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u>자 및 정선군민(정선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u> 제8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삭 제>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u>자</u> 3.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u>」 ----- ----- -----.

개 정 이 유

- 아라리촌의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안 마련 및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 용어 정비(제2조)
- 아라리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제3조)
- 입장료 징수조항의 개정(제5조~제6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충조항 수정(제8조)

제206회 정선군의회(2013.07.16.)에서 의결된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350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정선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4. 정선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정선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 내용

-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 금연구역 표시 및 흡연실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제6조~제7조)
-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제10조)

규 칙

2013년도 제8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 7. 31.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17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572	275	11	86	20	89	91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458	230	6	59	16	69	78
I	4급 소계	1	1	0	0	0	0	0
	서기관	1	1					
	4~5급 소계	3	2	0	1	0	0	0
	서기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1	1					
	행정,시설							
	의무·보건·간호	1			1			
	5급 소계	24	11	2	1	1	4	5
	행정	5	4	1				
	농업	0						
	의무	0			0			
	시설	0	0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3	3					
	행정·별정	1		1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9					4	5
	행정·환경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무·의료기술	1			1			
	6급 소계	120	68	3	8	4	17	20
	행정	49	28	3		1	7	10
	세무	3	3					
	전산	1	1					
	농업	3	3					
	녹지	2	2					
	보건	0			0			
	시설	9	9			0		
	행정·세무	3	2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전산	0	0					
	행정·농업	8	2				1	5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행정·녹지	2	2					
	행정·공업	3	2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4	4					
	전산·방송통신	0	0					
	농업·수의	1	1					
	농업·시설	5	1				4	
	행정·지도사	0			0			
	농업·지도사	0			0			
	보건·간호	1			1			
	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5						5
	행정·방송통신·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2			2			
	7급 소계	147	77	1	22	5	17	25
■	행정	47	27	1		0	7	12
	세무	7	6					1
	사회복지	7	3				3	1
	전산	1	1					
	공업	1	1			0		
	농업	3	3		0			
	녹지	2	2					
	보건	8			8			
	의료기술	3			3			
	간호	4			4			
	환경	3	1			2		
	시설	22	15			1	2	4
	방송통신	0	0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 복지	2	2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9	1		0		3	5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6	5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1	1		0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간호	1			1			
	보건진료	4			4			
8급 소계		111	48	0	22	5	18	18
	행정	30	15			1	6	8
	세무	1	1					
	사회복지	3					2	1
	전산	2	2					
	공업	2	1			1		
	농업	4	1				2	1
	녹지	3	3					
	보건	0			0			
	의료기술	4			4			
	간호	1			1			
	환경	1	0			1		
	시설	13	6			1	4	2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6	1				4	1
	행정·사회복지	3	3					0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1	0			1		
	행정·시설	7	3			0		4
	공업·시설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6	0		6			
	간호·의기	1			1			
	환경·녹지	1	1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4			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9급 소계		52	23	0	5	1	11	12
I	행정	12	5				4	3
	세무	3						3
	사회복지	13	4				4	5
	사서	1	1					
	공업	3	2			1		
	농업	5	2				2	1
	녹지	1	1					
	환경	2	2					
	보건	5			5			
	의료기술	0			0			
	시설	3	2				1	
	행정·시설	1	1			0		
	전산·방송통신	2	2					
	시설·전산	1	1					
연구직 계		4	2	0	2	0	0	0
I	연구사 소계	4	2	0	2			
	학예연구·별정	1	1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2			2			
지도직 계		20	3	0	17			
I	지도관 소계	2	0	0	2	0	0	0
	농촌지도관	2			2			
	지도사 소계	18	3	0	15			
	농촌지도사	17	3		14			
	농촌지도사·농업연구사	1			1			
별정직 계		2			2	0	0	0
I	6급상당 소계	1			1			
	보건진료원	1			1			
	7급상당 소계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기능직 계		87	39	5	6	4	20	13
I	6급 소계	4	3	0	0	1	0	0
	운전·기계	3	2			1		
	통신·전기	0						
	필가·조무	1	1					
	7급 소계	18	12	0	1	2	3	0
	토목	2	2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통신	2	2					
	전기	0	0					
	기계	2	0				2	
	운전	4	3		1			
	필기	0	0					
	조무	4	2			1	1	
	운전·기계	2	2					
	통신·전기	1	0			1		
	필기·조무	1	1					
	8급 소계	11	4	1	0	1	5	0
	토목	1	1			0		
	통신	0	0					
	전기	1	0			1		
	기계	0	0				0	
	영사	1	1					
	운전	4	0				4	0
	필기	1	1					
	워드	1	0				1	
	전산	1	1					
	조무	1	0	1				
	9급 소계	54	20	4	5	0	12	13
	토목	3	3					
	전화상담	1	1					
	통신	0						
	전기	2	2			0		
	기계	4					1	3
	열관리	1	1					
	운전	18	4	1	4		4	5
	필기	6	3	1	1		1	
	워드	1		1				
	전산	0	0					
	조무	17	5	1			6	5
	통신·전기	1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u> 제1조 ~ 제3조 (생략)	<u>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u>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안전관리 기능강화,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인력조정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원의 총수: 572명(증 4명)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
 - 본 청: 275명(증 4명)
 - 의 회: 11명(현행과 같음)
 - 직속기관: 86명(현행과 같음)
 - 사 업 소: 20명(현행과 같음)
 - 읍 면: 180명(현행과 같음)
- 직렬별 정원조정(별표)
 - 일반직
 - 행정·사회복지6급 증1명, 행정·공업6급 감1명, 사회복지7급 증1명, 행정9급 증1명, 사회복지9급 증2명, 시설9급 증1명
 - 기능직: 기능9급(기계) 감1명

2013년도 제8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 7. 31.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18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98호부터 제1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관광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제13조에 제78호부터 제9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8. 민방위대 운영계획 및 전시 민방위계획 수립

79. 민방위대편성 및 동원 운영

80. 민방위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81. 민방위운영협의회 운영
82. 민방위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83. 민방위 시설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84. 주민신고망 운영 및 정비
85.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
86. 충무계획 수립 및 도 승인
87. 정부연습계획(을지연습) 수립 및 실시
88.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89. 직장민방위대 편성 운영
90. 공익근무요원 배정 및 인도인접, 복무관리
91. 안전정책 총괄 등 안전에 관한 사항 전반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별정직(6급상당 또는 7급상당) 지방 공무원 또는 일반직·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9조 중 “「지방자치법」 제108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본청의 실장·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 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장·과장의 직급)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세무회계과장·<u>관광문화과장</u>·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u>건설방재과장</u>·동계올림픽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생태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97. (생략) <u>98. 민방위대 운영계획 및 전시 민방위 계획 수립</u> <u>99. 민방위대 편성 및 동원 운영</u> <u>100. 민방위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u> <u>101. 민방위운영협의회 운영</u> <u>102. 민방위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u> <u>103. 민방위 시설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u> <u>104. 주민신고망 운영 및 정비</u>	<u>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u> 제1조(목적)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 ----- ----- ----- 제3조(실장·과장의 직급) ----- ----- ----- ----- ----- <u>문화관광과장</u> ----- ----- ----- <u>안전건설과장</u> ----- ----- ----- ----- ----- ----- ----- 제6조(자치행정과) ----- ----- 1.~ 9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105. <u>민방위 날 훈련계획 수립</u> 106. <u>충무계획 수립 및 도 승인</u> 107. <u>정부연습계획(을지연습) 수립 및 실시</u> 108. <u>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 본부 운영</u> 109. <u>직장민방위대 편성 운영</u> 110. <u>공익근무요원 배정 및 인도인접, 복무관리</u>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1조(<u>관광문화과</u>) <u>관광문화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66. (생략)	제11조(<u>문화관광과</u>) <u>문화관광과장</u> ----- -----. 1.~ 66. (현행과 같음)
제13조(<u>건설방재과</u>) <u>건설방재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77. (생략)	제11조(<u>안전건설과</u>) <u>안전건설과장</u> ----- -----. 1.~ 77. (현행과 같음)
<신 설>	78. <u>민방위대 운영계획 및 전시 민방위 계획 수립</u>
<신 설>	79. <u>민방위대편성 및 동원 운영</u>
<신 설>	80. <u>민방위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u>
<신 설>	81. <u>민방위운영협의회 운영</u>
<신 설>	82. <u>민방위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u>
<신 설>	83. <u>민방위 시설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u>
<신 설>	84. <u>주민신고망 운영 및 정비</u>
<신 설>	85. <u>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u>
<신 설>	86. <u>충무계획 수립 및 도 승인</u>
<신 설>	87. <u>정부연습계획(을지연습) 수립 및 실시</u>
<신 설>	88. <u>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 본부 운영</u>
<신 설>	89. <u>직장민방위대 편성 운영</u>
<신 설>	90. <u>공익근무요원 배정 및 인도인접, 복무관리</u>
<신 설>	91. <u>안전정책 총괄 등 안전에 관한 사항 전반</u>

현행	개정안
제15조(소장 등)①~② (생략)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u>별정직(6급상당 또는 7급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u>	제15조(소장 등)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u>별정직(6급상당 또는 7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u>
제19조(읍장·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두는 읍장·면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제19조(읍장·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 ----- -----.

개 정 이 유

-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을 반영하고, 군정 주요현안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무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행정기구의 조정(제3조)
 - “관광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각각 변경
- 사무의 조정(제6조 및 제13조)
 - 자치행정과 사무 중 “민방위대 운영계획 및 전시 민방위계획 수립” 등 일부를 신설 안전건설과로 이관
 - 안전건설과에 “안전정책 총괄 등 안전에 관한 사항 전반”을 추가로 분장
- 보건진료소장의 임용 직렬 조정(제15조제3항)
 - 보건진료소장의 임용 직렬을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조정